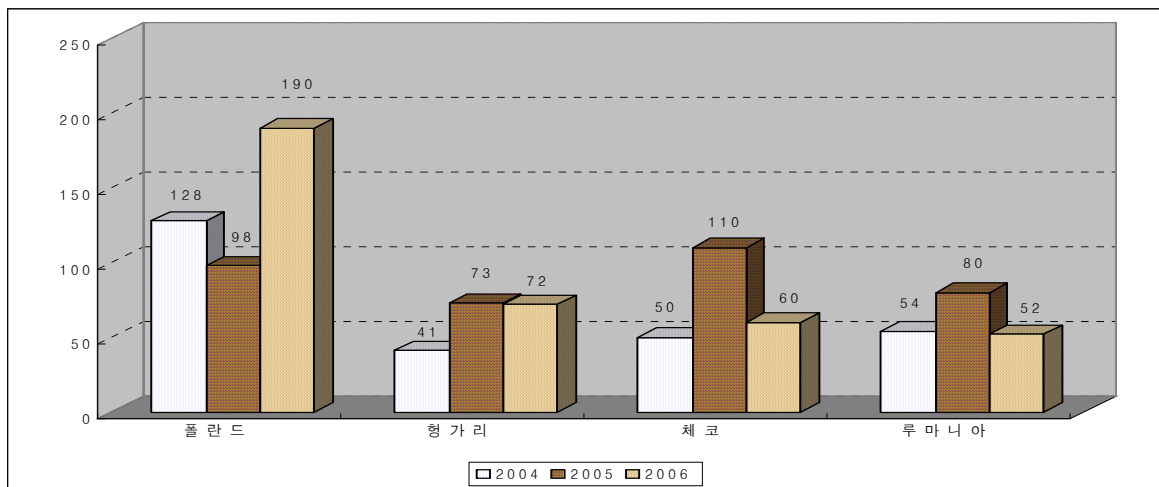


폴란드,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및 정책

<그림> 동유럽 주요 국가별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실적 추이

(단위: 억 달러)



자료: 각국 중앙은행, 재무부, 외국인투자 유치기관 등.

1.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 폴란드 경제는 해외자본 유치에 비교적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다가 1990년대 후반부터 FDI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음. 그러나 1995-96년 중의 경기과열 및 고도성장은 경상수지 적자를 확대하는 부작용을 초래함.
- 그러나 경상수지 적자는 대부분 FDI 유입으로 보전되고 있음. 2004년 기준으로 FDI 순유입액은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하기 충분한 상태이며, 1998-2000년 민영화를 통한 외국인투자가 FDI 유입의 주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2001-03년 민주좌파연맹(Democratic Left Alliance: SLD) 정권의 민영화 추진 지연 및 국제경제 환경 악화로 FDI 유입은 부진하였으나 2004년에는 다시 회복되었음.

- Polish Agency for Information and Foreign Investment(PAIiIZ)에 따르면, 1990년대 들어 폴란드는 OECD(1996), NATO(1999), EU(2004)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FDI가 유입되기 시작하여 1993-2006년간 누적기준 FDI 유입액이 1,080억 달러(폴란드 중앙은행 자료)로 추정됨.
- 2004년도에는 FDI 유입액이 전년 대비 176% 증가한 127억 8천만 달러로 2000년(대규모 민영화사업으로 106억 달러 유치) 이후 최고 수준이었음. 주요 투자사례로는 France Telecom(45억 달러), EBRD(40억 달러), Fiat(18억 달러), KBC Bank of Belgium(17억 달러), Metro of Germany(15억 달러), HIB of Germany, Citigroup, Tesco of the UK(이상 13억 달러) 등임.
- 폴란드 외국인투자 유치청(Polish Agency for Information and Foreign Investment: PAIiIZ)에 따르면, 2005년도 외국인투자 유입규모는 98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정됨.
- 프랑스 Michelin: Olsztyn 타이어플랜트 증설(2005.2: 3년간 2.5억 유로투자)
- LG Electronics: Mlawa시 플라즈마 TV 플랜트 건설(2005.4: 1.3억 달러투자)
- 스페인 Fagor: Wroclaw 가정용품 생산설비 확대(2005.7: 3,100만 유로투자)
- LG Philips LCD: Kobierzyce 평면TV 제조설비(2005.9: 4.29억 유로투자)
- 풍부한 숙련 저임 노동력, 유럽의 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 법인세 인하를 비롯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 및 EU 가입에 따른 투자여건 개선으로 2006년 FDI 유입규모는 190억 달러로 급증하여 경제성장을 견인함.
- 2007년 1-11월 중 FDI 순유입액은 147억 달러로 추정되나, 외국은행을 통한 해외차입 증가로 총외채잔액은 2006년 말 1,700억 달러에서 2007년 9월 기준으로 2,050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조사됨.

## 2. 외국인투자 정책

### (1) 정책 개요

- 폴란드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와 국영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영화를 중심으로 외국인투자 유치에 적극적이며, 2000년 4월부터 변동환율제를 실시하고 Zloty의 태환을 허용하는 등 외환제도를 정비함.

- 한편, 회사설립 절차는 자국기업의 설립절차와 유사하며, 외국인투자 금액은 제한이 없고 100% 외국자본(단독투자)으로도 회사설립이 가능함. 또한 현물 출자도 허용되나 외국인투자자의 경우 재무부의 허가가 필요함. 유한책임회사 및 주식회사의 일반적인 설립절차는 다음과 같음.
  - 연간 매출액이 2,500만 유로 초과기업이 폴란드 현지법인의 지분을 25% 이상 인수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의무신고(소요기간 2개월)
  - 회사정관 작성 및 공증(소요기간 4주)
  - 법원 등록
  - 사업자등록증 취득: 사업자통계(REGON) 번호 수령(소요기간 2일)
  - 재무부 신고
  - 은행계좌 개설(소요기간 1주)
  - 납세번호 취득(소요기간 3주)
- EU 규정에 따라 내외국인 동등대우 원칙이 확립되어 외국인은 완전한 법적 지위를 갖는 지점 설립이 가능하며, 통신서비스 등 정부의 허가가 요구되는 사업 영역도 대폭 축소되는 추세임.
- 1934년 상법을 대체한 2001년 개정 상법에서는 회사(유한책임회사 기준) 설립을 위한 최소자본금을 5만 Zloty(주식회사: 50만 Zloty)로 인상하였고, 주식회사 전환도 용이하도록 규정이 완화됨.
- 다만, 외국인투자자와 관련하여 건축, 토지구입, 용수사용, 공해유발 등은 유관 기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허가가 필요하며, 특별경제구역 및 낙후지역 이외 외국인투자자에 대해 제반 절차, 특혜 및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2) 외국인투자 우대조치

- 2004년 EU 가입으로 폴란드 정부는 내외국인 동등대우 정책 확립을 위해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각종 조세감면 혜택을 폐지 또는 축소 중임. 부분적으로 R&D 비용에 대한 조세감면, 고용확대를 위한 특별경제지대(Special Economic Zones: SEZ) 지정 등을 통해 제한적인 인센티브를 시행하고 있음.
- 1995년 이후 실업률이 높은 14개 지역에 특별경제지대를 지정운영(20년간) 하고 있으며, 재무부는 EU 가입 이후에도 기존 SEZ 투자기업의 기득권(투자 후 10년간 법인세 면제, 투자비용의 50% 한도의 소득공제 등)은 보호함.

○ 특별경제지대: Mielec, Katowice, Suwalki, Legnica, Walbrzych, Lodz 등

- 2001년 이후 SEZ 진출기업에 대한 우대조치

- 지원대상: 10만 Zloty 이상(중소기업: 투자계획의 65% 이상) 투자 및 5년간 영업활동 유지 기업
- 법인세 감면대상: 투자총액 4천만 Zloty 이상 사업의 경우 투자총액의 50% 한도 내 감면
- 부동산세 면제: 지방자치단체에 따름
- 보조금 지급대상: 직업훈련 및 고용창출

### (3) 조세제도 개관

<표> 동유럽 4개국의 주요 세율수준 비교  
(2008년 기준)

(단위: %)

	폴란드	헝가리	체코	루마니아
<b>소득세</b>				
법인세율	19	16	21	16
개인소득세율	19, 30, 40	18, 36	15	16
<b>부가가치세율</b>	22	20	19	19

자료: EIU, Country Commerce 2007.

- 폴란드는 1993년 부가가치세 도입, 1994년 회계기준법 제정, 1997년 조세감시법 제정 등을 통해 EU 기준적용을 위한 조세제도 정비가 진행 중임.
- 법인세율은 1996년 40%에서 매년 2% 정도 하향 조정되어 2004년 이후 19%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개인소득세율은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2006년 기준으로 19%, 30%, 40%의 3단계로 차등 적용됨.
- 별도의 국제협정이 없는 경우 해외로 지급되는 배당, 이자소득, 로열티 및 수수료에 대해서는 원천 징수되며, 원천징수세율은 배당 과세는 19%, 이자소득, 로열티 및 수수료 과세는 20%를 적용함.
- 부가가치세는 1993년에 도입되어 0%, 3%, 7%, 22%로 차등 적용되었으나 EU 가입 이후에는 22%의 단일세율을 적용함. 수출업체는 통관 후 수출품 제조에 투입된 원자재에 부가된 부가세 환급을 요청할 수 있음.

- 특별소비세는 승용차, 전자장비, 연료, 환경저해 포장재 등에 적용되며, 재무부는 일정 한도내 소비세율을 변경할 수 있고 부과대상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 높은 관세율을 추가 적용함.
- 1999년 연금 개혁으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장기금 비율은 종업원 임금의 20% 수준이며, 사회보장기금 납부액은 종업원 임금, 각종 부가급여, 시간외 수당 등을 합산하여 산출함.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유럽·기획조사팀장 조 양 현  
(☎3779-6663) yhjo@koreaexim.go.kr